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복도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구역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특별관리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관리대상 기반시설 범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의 기준(안 제5조의2 제1항)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은 특별관리구역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와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나.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의2 제2·3·4항)

관리계획은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의 목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함.

다.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6조제2항)

특별관리구역 관리 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연계·관리할 필요가 있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포함.

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협의(안 제28조의3)

세종시장이 예정지역 해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할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도시·군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준용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5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관리구역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목적으로 구역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의 목표
2. 특별관리구역 관련 계획과 기반시설 등의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 방안
5.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의 이행 방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u> <u>①법 제15조의2 제3항 단서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u> <u>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특별관리구역 면적의 5퍼센트의</u> <u>범위 안에서 면적을 변경하는</u> <u>경우(새로운 목적으로 구역이</u> <u>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u> <u>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u> <u>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u> <u>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u> <u>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u> <u>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u> <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u> <u>되어야 한다.</u> <u>1.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의</u> <u>목표</u> <u>2. 특별관리구역 관련 계획과 기반</u> <u>시설 등의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u> <u>3.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u> <u>관한 사항</u>

부 칙

6. 그 밖에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건설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로 하고,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4. <u>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 방안</u> 5. <u>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의 이행 방안</u> 6. 그 밖에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u>건설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④ <u>건설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생략) <u><신설></u>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45조제2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u>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 시설,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신설></u> 제28조의3·제28조의4 (생략)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8조의3(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의4·제28조의5 (현행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686